

충청북도 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

검토보고

1.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96. 9. 25

나. 회부일자 : '96. 9. 25

3.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운영상황을 공개하므로서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재정운영 및 집행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4. 주요골자

○ 충청북도 재정운영상황 공개 조례를 제정하여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재정운영 계획 및 결산내역을 공개하는 내용임.

5. 검토의견

충청북도 재정운영상황 공개 조례안을 검토한 바

이는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의 재정운영상황을 공개하여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동시에 재정운영 및 집행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로는

첫째, 재정운영상황은 매년 2월과 하반기(의회의 결산승인 후)에 각각 주민에게 공개
도록 하며,

둘째, 2월에 공개하는 재정운영상황에는

1. 재정여건 및 재정운용 방침
2. 당해년도의 예산현황 및 주요사업조사·주민부담 지방세 예정액·지방채등
채무관리계획·기금운영계획·공유재산·중요 물품등의 취득·처분계획
공기업 운영계획, 기타 재정운영상 주민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
으로 하고

하반기에 공개하는 재정운영상황에는

1. 전년도의 결산 개황·세입세출 집행 상황·주민부담 지방세 상황·지방채등
채무관리 상황·기금운용 상황·기타 재정운영상 주민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으로 함.

셋째, 공개방법은 주민이 용이하게 접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넷째, 주민공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는

1.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정책에 관한 사항

2.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정책에 관한 사항
3. 시설공사, 물품의 제조 및 구매, 용역에 관한 예산 및 입찰에 관한 사항으로 기밀에 속하는 사항
4.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재정이나 도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기타 본 조례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주민 공개제도를 도입 지방재정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를 통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지방재정운영 및 집행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됨.